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법률 제20927호, 2025. 4. 22. 공포, 2025.10.23. 시행)」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등록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장장애를 신설하여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함

3. 주요내용

- 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포함(안 제17조제2항 본문)
- 나.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모바일 장애인등록증 포함) 진위 확인을 통해 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증 제시 면제 가능(안 제17조제2항 단서)
- 다. 모바일 등록증 도입을 계기로 등록증 발급 수수료에 대해 면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 라.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장장애를 신설하여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함(안 별표1 제16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8. 22. ~ 10.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법 제32조제1항”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를 “장애인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7조의2”를 “법 제32조제8항 또는 제17조의2”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를 각각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6까지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장애인등록증 발급 비용)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발급과 관련하여 장애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

별표 1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췌장장애(胰臟障碍人)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부 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 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 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 다.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 제17 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 장애인 의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법 제32조제1항----- -- 장애인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모바일 장 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 --- 법 제32조제8 항 또는 제17조의2----- -----. 제20조의2(장애인등록증 발급 비 용)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 (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발급 과 관련하여 장애인에게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 은 장애인이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
<신 설>	

<u>제20조의2 ~ 제20조의5</u> (생략) <별표 1> 1.~15. (생략) <u><신설></u>	<u>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u> <u>1. 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하는 경우</u> <u>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u> <u>제20조의3 ~ 제20조의6</u> (현행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와 같음) <별표 1> 1.~15. (현행과 같음) <u>16. 췌장장애(胰臟障碍人)</u> <u>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299